

# 제과점 오픈을 위한 허가 절차

## 식품 영업 허가와 사업자 등록

점포 운영에 따른 입지 선정 및 시설 공사 다음 절차로는 영업을 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에 영업 허가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제과점 영업 허가와 사업자 등록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 신규 오픈시 허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업'에 속한 제과점은 해당 시·군·구청에 영업 허가 신청을 해야 영업 허가증이 나온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신규 오픈의 경우 '영업 허가 신청서'와 '시설배치도', '교육 필증'이다. '영업 허가 신청서'는 해당 관청의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기재 사항은 '식품( )영업 허가 신청서' 라 표시된 ( )안에 '휴게음식점'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난의 ⑤번 항목에는 '과자점'이라 기재하면 된다.

'시설 배치도'도 해당 관청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시설 배치도는 제과점의 매장 및 공장의 시설이 위치해 있는 상태를 평면도로 그려 영업 허가 신청서와 함께 해당 관청 위생계에 접수시키면 된다. 또 다른 서류인 '교육 필증'은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규업주 위생교육'을 받으면 교육 시행 단체인 대한제과협회에서 교부되므로 이를 위생계에 접수 시키면 된다. 단 시설물(특히 생산 시설)이 지하에 있는 경우 별도로 소방법에 의거해 화재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필증을 교부받기 위한 신규 업주 위생 교육은 실시 날짜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과점 오픈 시기와 일치되지 않아 타 서류와 함께 영업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점포 오픈 전에 신규 업주 위생 교육 일정을 알아 미리 교육을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오픈 예정일 이후에 교육이 있을 경우 어느 날짜에 교육을 받겠다고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해 해당 관청 위생계에 접수하면 임시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신규업주 교육 후 교부받은 교육 필증은 위생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약서를 제출하고 임시로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무허가 영업이 되므로 많은 벌금을 물게 된다. 임시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약서는 대한제과협회 중앙회나 각 지회 및 지부에 비치돼 있으며 연락처는 본지 뒷부분의 '베이커리기족 주소록'을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 신규 업주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 일자와 장소는 해당 지역이 서울 및 경기, 강원은 대한제과협회 중앙회(02-273-

1830), 부산은 부산지회(051-644-7711), 대구 및 경북은 대구지회(053-425-4706), 울산 및 경남은 창원지부(0551-267-6637), 광주 및 전남은 광주지회(062-224-2566), 대전 및 충남·북은 대전지회(042-254-0702), 경기도는 수원지부(0331-232-0100), 전북은 전주지부(0652-241-6192)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제과점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영업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업주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고 영업 시작을 위한 서류 중 시설 배치도도 접수 시켜야 되는 등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서류 중 기존의 영업 허가 신청서 대신 '영업신고서'를 작성해 타 서류와 함께 위생계에 접수시켜야 하는 것만 달라지게 된다.

### 명의 변경 및 상속시 허가

한편 타인이 영업하던 제과점을 인수받는 '명의 변경'과 제과점을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영업 허가 신청서 대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와 '교육 필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위생계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 때 추가로 필요한 기타 서류는 점포의 양도를 증명하는 양도 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이 서류에 찍힌 도장이 꼭 인감 도장이어야 한다.

또 상속의 경우 호적 등본 등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를 행정 처분과 1년 이하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 신규오픈이나 명의 변경 모두 점포가 10평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 철도 채권 45만원어치를 사야 한다.

### 사업자 등록 절차

해당 관청에 영업 허가 신청과 함께 필요한 것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제과점의 '영업 허가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2부,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된다(다음호엔 인력 조달 및 임금 산정에 대해). [5]

〈글/박종선〉